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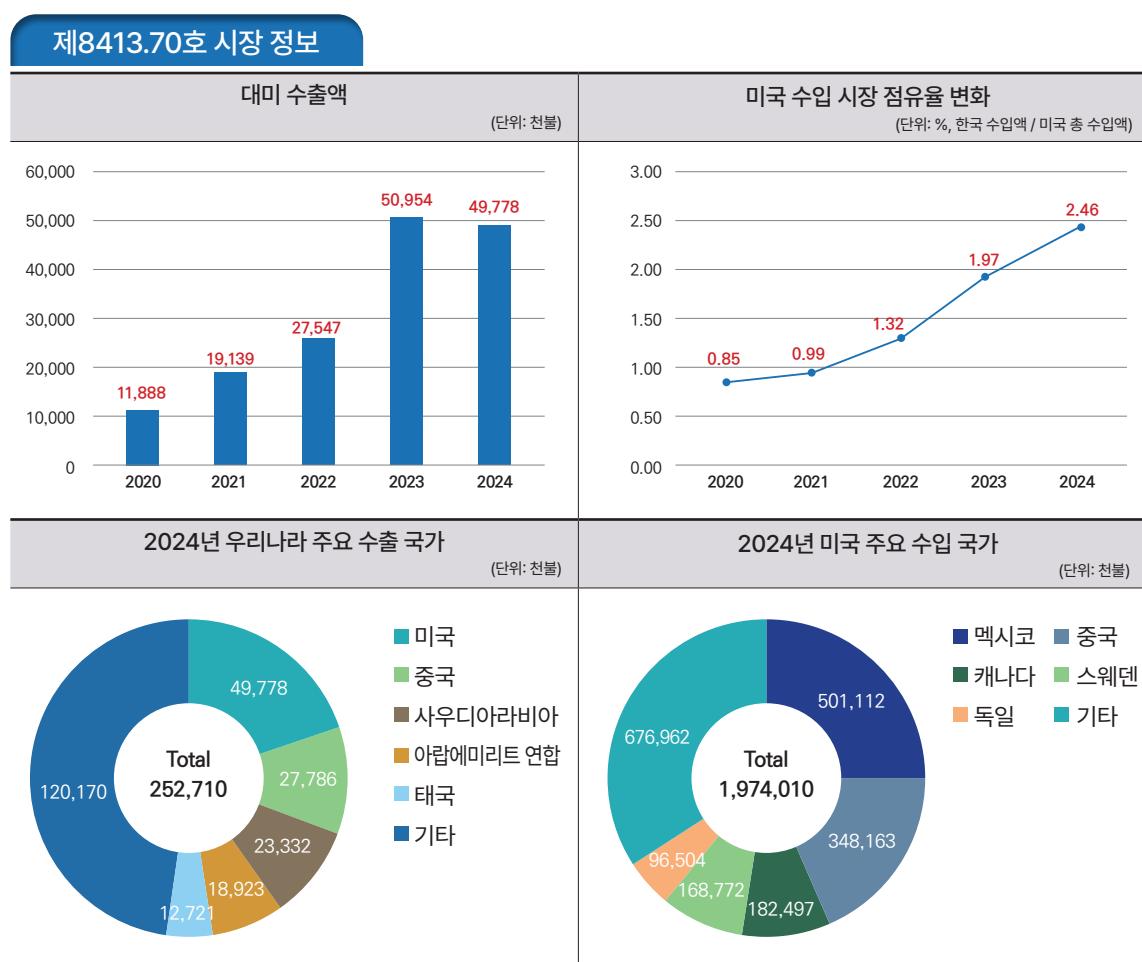
##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펌프

### 요약

사례명	자동차용 전면유리 세정 펌프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HQ H303866 (2020.02.13.)
사실관계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부품을 멕시코에서 가공·조립(모터 하우징, 아마추어, 모터 엔드캡 제작, 조립 및 최종 제품 생산)하여 생산된 자동차용 전면유리 세정 펌프를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p>다양한 국가에서 부품이 수입되었으나,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사출성형, 납땜, 기계 가공, 압착 고정 등 다양하고 복잡한 공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부품은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되었다고 판정하여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멕시코산으로 판정함 (제301조 미적용)</p>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413.7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 사례명 [자동차용 전면유리 세정 펌프]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HQ H303866 (2020.02.13.)

#### 사실관계

요청자 Thomas M.Keating (대리인: Rock Trade Law LLC)

제품	제품명	•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펌프 (제품번호: 1999-1WP0055EP)
	구성	• 멕시코산(약 50%), 중국산(약 33%), 일본/미국 등 기타 국가산(나머지)
	용도	•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시스템용 원심 펌프 장치
	완제품 HTSUS	• 8413.70.20

#### 제조공정



#### 멕시코 상세공정

##### 모터 하우징(스테이터) 생산

1. 일본산 강판 스트립을 가공하여 모터 하우징 형태로 성형
2. 하우징에 중국산 부싱을 공압 프레스로 삽입
3. 중국산 페라이트 바와 스프링을 하우징에 고정 배치
4. 모터 하우징 세척
5. 자게 형성 기계에 모터 하우징 서브어셈블리를 넣어 페라이트 바 자화

##### 아마추어(로터, 회전자) 생산

1. 일본산 강판을 가공하여 라미네이션 시트(적층판) 제작
2. 중국산 샤프트 표면 미끄럼 방지 가공 처리
3. 라미네이션 시트 쌓은 후 공압 프레스로 샤프트를 적층된 라미네이션 중앙에 삽입
4. 에폭시 분말 분사 후 가열하여 경화를 통한 절연 처리 수행
5. 중국산 정류자(Commutator) 장착 및 에폭시 접착 후 경화
6. 멕시코산 절연 구리 와이어를 적층체 주위에 감고 정류자에 영구적으로 용착

7. 전기 저항 테스트 및 밸런싱 조정, 정류자 표면 가공 등 정밀 공정 수행
8. 세척 및 중국산 플라스틱 슬링거, 와셔 장착
9. 최종 전기 테스트

#### 모터 엔드캡 제작

1. 미국산 열가소성 수지를 사출 성형하여 플라스틱 캡 제작
2. 여러 부품(부싱, 리테이너 링, 브러시, 단자 등)을 가공 조립하여 엔드캡 제작
3. 진공 청소로 이물질 제거 및 육안 검사

#### 모터 어셈블리 최종 조립

1. 위 세 가지 하위 조립체를 정렬·삽입하여 모터 완성
2. 부하 등 성능·시각·작동 테스트 수행

#### 펌프 최종 조립

1. 중국산 열가소성 수지로 펌프 하우징, 중국산 활동 단자로 커넥터 성형, 일본산 수지로 임펠러 사출성형
2. 모터와 펌프 부품 결합 조립(커넥터에 모터 압입, 중국산 고무 씰 부착, 임펠러 압입 등)
3. 최종 성능 및 누수 테스트, 육안 검사 및 라벨링 후 완제품 완성

### 쟁점사항

-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 USTR은『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중국산 특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사용

- 실질적 변형: 제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CBP는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 정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고려해 사례별 (case-by-case)로 판정을 내리며, 이때 핵심 판단 요소는 수행된 작업의 범위, 원재료가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573 F. Supp. 1149 (Ct. Int'l Trade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관련 법령 및 분석

- 경미하거나 간단한 조립 작업은 복잡하고 의미 있는 조립 작업과 달리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때 관련되는 요소들로는 ① 작업의 성격(조립되는 부품의 수 포함), ② 작업 단계의 다양성, ③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④ 숙련된 기술, ⑤ 작업의 디테일, ⑥ 품질 관리 등이 있음

❖ 참고 판례: *C.S.D. 80-111, 85-25, 89-110, 89-118, 90-51, 90-97*

-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CBP는 해당 사례에서 실질적 변형의 판단을 위해 HQ H282391 및 HQ H303529 사례를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82391 (2017.03.16.)*

**사례** 여러 국가에서 200개 이상의 부품을 수입한 후 27개 이상의 복잡한 공정을 수행하여 기어박스와 모터 서브어셈블리를 조립하고 최종 기어 모터를 생산함. 이때, 전체 공정은 약 2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노동자들은 조립 숙련도 향상을 위한 추가 훈련을 이수함

**판정** 조립 공정이 복잡하고 외국산 부품들이 정체성을 상실했으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사례** 미완성 우편 요금계기 생산을 위한 주요 서브어셈블리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었으나, 나머지 서브어셈블리들은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이들 서브어셈블리를 연결하여 최종 조립하는 과정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짐

**판정** 중국에서 조립 공정뿐만 아니라 일부 서브어셈블리 또한 제조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에서 행해진 공정이 충분히 광범위하며 복잡한 것으로 판정하여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 판정 결과

▣ 본 제품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부품이 멕시코에서 복잡한 가공 및 조립 공정을 거쳐 완성됨

- 가공에는 사출성형, 납땜, 열·압력으로 결합, 기계 가공, 압착 고정 등 복합적인 공정이 수행됨
- 전체 조립은 단순한 부품 조합을 넘어 다단계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각 부품은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새로운 상품(펌프)으로 전환됨
- 따라서 멕시코 내 조립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함

## 결론

- ✓ 멕시코에서 내 조립 공정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세정 펌프의 원산지는 멕시코임
- ✓ 따라서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 ③ 시사점

- 수입된 여러 부품들은 멕시코에서 부품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구성요소로 통합되어,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었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간주됨
- 따라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301조 무역제재조치는 적용되지 않음

### ④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3866 (2020.02.13.), <https://rulings.cbp.gov/ruling/H303866>
- CBP Ruling HQ H282391 (2017.03.16.), <https://rulings.cbp.gov/ruling/H282391>
-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52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2C+69+CCPA+151+%281982%29>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